

웅지세무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회의명	대학평의원회 회의				차수	2020학년도-8차
개최일자	2020년 12월 29일	회의시작 회의종료	14:00 15:30	장소	신관 108호	
소집통보	2020년 12월 23일	통보방법		문자 및 이메일 (간사가 발송)		
재적인원	9명	참석인원	8명	불참인원	1명	
배석자	1. 사무처 윤선희 주임 (2020추경예산 및 2021본예산 설명을 위해)				진행	이재현 의장
					기록·작성	박윤호 간사
회의안건	1. 학교규칙 개정안 심의 2. 교육과정 자문 3. 2020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자문 4.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안 자문					
회의결과	2페이지, 3페이지의 회의결과 요약 참조					
회의자료	1. 학교규칙(학칙)(37판-개정 2020.XX.XX.)_신구조문대비표 2.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3.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4. 2021학년도 회계세무정보학부 교육과정표					
첨부문서	1. 회의결과 요약 1부. 2. 회의록 1부. 3. 출석서명부 1부.					
기타사항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서명

교원의원			직원의원			학생의원	동문의원		외부의원	
이재현 의장	공석	공석	박준석 의원	김은찬 부의장	이태승 의원	김현지 의원	이규진 의원	오승우 의원	이송현 의원	김정철 의원
이재현			박준석	김은찬	이태승	김현지			이송현	김정철

첨부문서#1

회의결과 요약

#1 P-5	학칙 제 9조 개정안을 확정하다
#2 P-5	학칙 제 9조 3항 개정안을 확정하다.
#3 P-7	학칙 제 29조 개정안을 확정하다.
#4 P-8	학칙 제 30조 개정안을 확정하다
#5 P-8	학칙 제 34조 개정안을 확정하다
#6 P-8	학칙 제 38조 개정안을 확정하다
#7 P-9	학칙 제 42조 개정안을 확정하다
#8 P-9	학칙 제 45조 개정안을 확정하다
#9 P-9	학칙 제 47조 개정안을 확정하다
#10 P-10	학칙 제 50조 개정안을 확정하다
#11 P-10	학칙 제 57조 개정안을 확정하다
#12 P-11	학칙 제 58조 개정안을 확정하다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서명

교원의원			직원의원			학생의원		동문의원		외부의원	
이재현 의장	공석	공석	박준석 의원	김은찬 부의장	이태승 의원	김현지 의원	이규진 의원	오승우 의원	이송현 의원	김정철 의원	
이재현			박준석	김은찬	이태승	김현지			이송현	김정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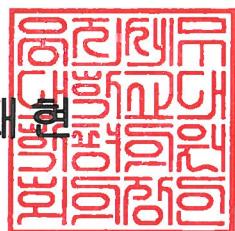
첨부문서#1

회의결과 요약

#13 P-11	학칙 제 60조, 제 61조 개정안을 확정하다
#14 P-11	학칙 제 20장 개정안을 확정하다
#15 P-17	학칙 제 15장 명칭을 개정하고 제75조의 2항 개정안을 확정하다
#16 P-21	학과제 운영을 전제로 한 전공제 교육과정은 다소 편법적인 방법이므로,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목적에 적합한 학과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다.
#17 P-	기부수익과 관련한 계획서를 기획처에서 사무처로 제출하도록 촉구하다.

위 내용을 확인함.

웅지세무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이재현



3 / 25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서명

교원의원		직원의원			학생의원		동문의원		외부의원	
이재현 의장	공석	공석	박준석 의원	김은찬 부의장	이태승 의원	김현지 의원	이규진 의원	오승우 의원	이송현 의원	김정철 의원
이재현			박준석	김은찬	이태승	김현지			불참	

첨부문서#2

회의록

이재현 의장이 성원을 확인하고 회의를 시작함.

이재현 의장 세 가지 안건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하다

1. 학칙 변경에 관한 내용
2. 교비 회계에 관한 내용
3.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

대학평의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해야 할 것은 학칙에 관한 내용이다. 그 다음 교비에 관한 내용과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의 경우 자문기관으로서 궁금한 사안에 대해 소명을 듣고 판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시작하다.

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조문 하나하나 심의를 할지, 검토의견서를 중점으로 판단할지 제 의원에게 묻다.

김은찬 부의장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간단히 개요를 설명을 하고 의원들이 안건이 있을 경우 논의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다.

학칙과 관련하여 설명하다.

내용 중에서 직제와 부속부설기관에 관련된 규정을 직제 규정이라는 하위 규정을 개정하여 위임한 것이다. 그 다음은 16학번부터 20학번까지는 한 학기 최고 이수 학점이 21학점 이었다. 과거와 같이 24학점으로 늘리는 내용이 주요한 내용이다. 그 외 학생자치기구규정이 있다. 전임학생회와 논의되었던 부분이다. 학생회 규정을 없애고, 학칙이라는 것이 내부 규칙이다 보니 구분하여 학생회칙으로 하여 학생회 내부에서 제정하고 개정하고 학교는 단순히 공포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 학생회 규정과 같은 학칙을 학생회칙으로 바꿨다. 학생회비의 경우에도 학생회칙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교수회와 관련한 개정안을 설명하다. 우리학교에 교수회가 존재하다가 2007년 정도에 사라졌고, 당시 학칙을 개정하면서 학칙에서 교수회 내용이 빠졌다. 교수회를 교무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운용을 해왔다. 헌데 교수회와 교무위원회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교무위원회는 학교 내부의 주요 위원회이고 보직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학교의 주요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서명

교원의원			직원의원			학생의원		동문의원		외부의원	
이재현 의장	공석	공석	박준석 의원	김은찬 부의장	이태승 의원	김현지 의원	이규진 의원	오승우 의원	이송현 의원	김정철 의원	
이재현			박준석	김은찬	이태승	김현지			불참		

사안들을 총장님이 원하는 상황에 맞추어 심의하는 그런 기구라면, 학칙 개정안에서 교수회는 앞서 언급한 기구라기보다 전임교수 전체 교수회의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대학평의원회 교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체교수 회의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교수회라는 것이 정확한 근거가 없었다. 전체 교수 회의도 잘 모여지지도 않았다. 그래서 학칙에 교수회 내용을 넣고자 했던 것이 안건을 상정한 이유였다. 1차 심의기구인 교무위원회에서는 대학평의원회 자료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를 했다. 교무위원회 심의 이후에 교수 3명이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교수들 쪽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몇 가지 있다. 전체교수 회의 인데 전임교수가 아닌 자를 둘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는가,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보직자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가 왜 또 필요한가. 교무위원회가 존재하는데. 그 다음은 교수회의소집권을 의장이 총장이 되어 갖게 되고, 교수회가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제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 교수 3명의 공통 의견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수회를 학칙에서 규정만 하되, 정확한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교수회에서 교수회 운영규정 또는 교수회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학평의원회에서 교수회의 권한이라든지, 운영방법을 학칙으로 결정할 필요도 없다. 교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76조의 2항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하고, 75조의 2항 같은 내용만 학칙에 남겨 놓는 것이다.

제75조의2(교수회 구성) ① 본 대학에는 교수회를 두며,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2항을 두어서 1항의 교수회의 운영이나 권한은 교수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이 정도이다. 교수회 운영규정을 따로 만들어야 하겠지만, 교수들이 만들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만을 규정하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 학칙은 큰 범위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교무위원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할 생각이다. 학칙에 관련한 의견들이 있으면 논의했으면 좋겠고, 교수회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재현 의장 자세한 설명에 감사하다.

개정안 설명을 들어보니 조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의원들에게 조항들을 심의하고 개정 찬성, 반대 거수로 투표를 제안하다.
제9조(직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다.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서명

교원의원			직원의원			학생의원		동문의원		외부의원	
이재현 의장	공석	공석	박준석 의원	김은찬 부의장	이태승 의원	김현지 의원	이규진 의원	오승우 의원	이송현 의원	김정철 의원	
이재현			박준석	김은찬	이태승	김현지			불참		

제9조(직제) ① 「직제규정」에 따라 대학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서를 둔다.

<개정 2015.06.30., 2016.08.25., 2020.03.16., 2020.XX.XX.>

학교 직제규정과 법인정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바꾼 것으로 보인다.

제 의원들에게 반대 의견이 있는지 묻다.

이태승 의원 직제 규정이 따로 있는지 묻다.

김은찬 부의장 만들었다고 답하다.

이태승 의원 내용은 동일한데 위임만 하는 것인지 묻다.

김은찬 부의장 정관과 학칙이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학교에서 직제를 자주 바꾸기 때문에 규정으로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차라리 직제 규정으로 넘겨서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

<제9조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개정을 선포하다>

이재현 의장 제9조 3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다.

우리학교에 과거 평생교육원이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재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 조항에서 평생교육원을 설치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제 의원들에게 반대 의견이 있는지 묻다.

이견이 없으므로 개정을 선포하다.

<제9조 3항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개정을 선포하다>

이재현 의장 제29조(휴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다.

휴학규정이 왜 개정안이 올라왔는지 묻다.

김은찬 부의장 기존 규정의 문구만 수정 된 것임을 말하다.

제29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하여야 한다.

3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 무조건 휴학을 해야만 한다고 되어있었는데 수업 주차가 16주 수업이기 때문에 4주까지는 수업을 진행 할 수 없더라도 성적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휴학 할 수 있다. 라고 바꿔서 학생들이 선택 할 수 있게 바꾼 것이다. 4주 이상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성적은 안 나올 것이다.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서명

교원의원			직원의원			학생의원	동문의원		외부의원	
이재현 의장	공석	공석	박준석 의원	김은찬 부의장	이태승 의원	김현지 의원	이규진 의원	오승우 의원	이송현 의원	김정철 의원
이재현			박준석	김은찬	이태승	김현지			불참	

이태승 의원

⑤ 휴학생은 학기개시일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으며 학적을 보유한다.

그러나 학기 개시일 이후에 휴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묻다.

김은찬 부의장

기준에는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면, 수업개시일 이후에 휴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했다. 군 휴학이나 이런 경우를 제외한 일반 휴학의 경우에. 그런데 사실상 일반 휴학을 인정을 했다. 총장님이 인정하는 사유로 해서. 이런 경우에 변경 전 규정에 의하면 등록을 하고 휴학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다. 학생들이 등록을 안 하고 휴학을 하려고 했다. 실제로도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되, 휴학을 하고, 하지 않고 등록 여부를 삭제 한 것이다. 학칙에 의하면 등록 없이 휴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재현 의장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다.

김은찬 부의장

휴학이라는 것 자체가 총장이 인정하는 기한 안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총장님이 인정하는 것은 학기개시일 이전이다. 교학처에서도 그렇게 공지를 하고 있다.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예외적으로 일반휴학을 하게 될 때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바꾼 것이다.

이재현 의장

그렇다면 학기 개시일 이전이라는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은가 묻다.

김은찬 부의장

이것은 휴학생이 학적을 보유한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이재현 의장

학기개시일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을 확인하다.

제 의원들에게 의견이 있는지 묻다.

이견이 없으므로 개정을 선포하다.

<제29조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개정을 선포하다.>

이재현 의장

제30조(복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다.

복학을 규정으로 의무적으로 규정 한 것인지 묻다.

김은찬 부의장

등록기간이라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문구만 수정한 것을 알리다.

이재현 의장

휴학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당연 복학을 하는 것이 맞다.

제 의원들에게 의견이 있는지 묻다.

이견이 없으므로 개정을 선포하다.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서명

교원의원			직원의원			학생의원	동문의원		외부의원	
이재현 의장	공석	공석	박준석 의원	김은찬 부의장	이태승 의원	김현지 의원	이규진 의원	오승우 의원	이송현 의원	김정철 의원
이재현			박준석	김은찬	이태승	김현지			불참	

<제30조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개정을 선포하다.>

이재현 의장 제34조(교과이수단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다.

과거에 21학점 제한이 있었지만 다시 24학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견이 있는지 묻다.

김은찬 부의장 전임 학생회에서 요구했던 사안이다. 가능하다면 24학점으로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재현 의장 배경은 자세하게 모르나 이미 교무위원회에서도 심의가 된 사안이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미 한 학기 최대 24학점 이수로 운영을 했었다. 학생들의 권리를 늘리는 방향이므로 학생위원회의 반대가 없다면 개정하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
이견이 없으므로 개정을 선포하다.

<제34조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개정을 선포하다.>

이재현 의장 제38조(교수시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다.
책임시수를 명문화 한 것이다.

제38조(교수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1.11., 2020.03.16., 2020.XX.XX.>

예전에 책임 시간이 12시간이었다. 규정이 없었던 것인지 묻다.

김은찬 부의장 과거에는 학칙에서 규정하던 것은 없었다. 강사료 지급 규정과 교수 복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이재현 의장 학칙을 개정 하면 강사료 지급규정과 교수 복무규정 전부 개정 되는 것인지 묻다.

김은찬 부의장 개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을 하고, 안하고는 크게 의미가 없다. 학칙이 상위 규정이므로 학칙이 우선된다.

이재현 의장 이 개정안도 위원회 심의를 거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다면 개정하도록 하다. 이견이 없으므로 개정을 선포하다.

<제38조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개정을 선포하다.>

이재현 의장 제42조(시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다.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서명

교원의원			직원의원			학생의원	동문의원		외부의원	
이재현 의장	공석	공석	박준석 의원	김은찬 부의장	이태승 의원	김현지 의원	이규진 의원	오승우 의원	이송현 의원	김정철 의원
이재현			박준석	김은찬	이태승	김현지			불참	

제42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시시험, 월말시험, 기말시험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5.02.06.>

수시고사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수시, 월말, 기말 시험 등이 명문화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학기 말 시험을 의무로, 수시 및 중간시험을 할 수 있다.로 바꾼 것이다. 현행 운영을 개정안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지 묻다.

김은찬 부의장 그렇다고 답하다. 월말시험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재현 의장 개정안이 현실과 맞춘 규정 개정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다면 개정하도록 하다. 이견이 없으므로 개정을 선포하다.

<제42조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개정을 선포하다.>

이재현 의장 제45조(성적의 취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다.

제34조와 관련하여 최대이수 학점을 21학점에서 24학점으로 변경 하는 것이므로 이견 없이 개정을 선포하다.

<제45조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개정을 선포하다.>

이재현 의장 제47조(졸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다.

제47조(졸업) ① ~ ⑤ (생략)

⑥ 전체학기 평균평균 2.0 미만은 졸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01.11.>

과거 평점평균 2.0 미만은 졸업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지만 사문화된 규정이므로 학생 의원의 이견이 없다면 개정하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

김현지 의원 개정안에 대하여 전대학생회의 의견이 있었는지 묻다.

김은찬 부의장 따로 의견이 없었다고 답하다. 이 규정 자체가 사문화 되었다. 평점평균 2.0 미만이라고 하여 졸업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이재현 의장 현실과 맞추기 위한 개정이므로 이견 없이 개정을 선포하다.

<제47조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개정을 선포하다.>

이재현 의장 제50조 (수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다.

별지 서식의 문제 이므로 이견 없이 개정을 선포하다.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서명

교원의원			직원의원			학생의원	동문의원		외부의원	
이재현 의장	공석	공석	박준석 의원	김은찬 부의장	이태승 의원	김현지 의원	이규진 의원	오승우 의원	이승현 의원	김정철 의원
이재현			박준석	김은찬	이태승	김현지			불참	

<제50조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개정을 선포하다.>

이재현 의장 제57조(총학생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다.

이 규정은 마지막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상정 되었었던 안건이다. 학생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심의 기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학생회 의견이라고 하여 수용할 필요는 없다. 존중 할 뿐이다. 학생 의원도 참석해 있기 때문에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① 본 대학교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웅지세무대학교 총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XX.XX.>

1항은 웅지세무대학교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2항 또한 논의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은찬 부의장 총학생회 규정을 없애고, 총학생회 회칙으로 바꾼 것이다.

이재현 의장 총학생회 회칙이 없는지 묻다.

김은찬 부의장 공표된 총학생회 회칙이 있다고 말하다.

이재현 의장 학생회의 자율권을 존중 하는 것인지 재차 확인하다.

김은찬 부의장 그렇다고 답하다.

이재현 의장 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하다.

제 의원들에게 의견이 있는지 묻다.

이견 없이 개정을 선포하다.

<제57조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개정을 선포하다.>

이재현 의장 제58조(학생회비)에 논의를 시작하다.

제58조(학생회비) 학생회 회원은 총학생회칙에 따라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 2020.03.16., 2020.XX.XX.>

학생회비는 총학생회 회칙에서 정하겠다.

김은찬 부의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회비를 규정에 근거하여 걷겠다는 내용이다.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서명

교원의원			직원의원			학생의원		동문의원		외부의원	
이재현 의장	공석	공석	박준석 의원	김은찬 부의장	이태승 의원	김현지 의원	이규진 의원	오승우 의원	이송현 의원	김정철 의원	
이재현			박준석	김은찬	이태승	김현지			불참		

총학생회 회칙에는 임의적이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학생회비를 필수화 할 수가 없다.

이재현 의장 과거에는 학생회비를 학교 측과 상의하여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학생회에서 정하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
제 의원들에게 반대 의견이 있는지 묻다.
이견 없이 개정을 선포하다.

<제58조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개정을 선포하다.>

이재현 의장 제60조(대표의 선출 및 임기)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다.
총학생회규정을 총학생회회칙으로 변경하는 문구변경이다.
제61조(학생자치기구 조직·운영) 또한 총학생회 회칙을 따른다. 라고 하는 내용 추가 이다.
제 의원들에게 반대 의견이 있는지 묻다.
이견 없이 개정을 선포하다.

<제60조,61조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개정을 선포하다.>

이재현 의장 제 20장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다.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하여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제 의원들에게 반대 의견이 있는지 묻다.
이견 없이 개정을 선포하다. 15:20

<제 20장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개정을 선포하다.>

이재현 의장 제 15장 교수회 및 제위원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다.
학교에서 대학평의원회라는 것은 교수 직원 학생의 3자 대표 합의체로 볼 수 있다.
교수회라는 것은 교수들 본인들에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의 정책을 결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의결기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평의원회에서 신중히 심의하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김은찬 부의장의 설명은 교수회의 자치권을 존중해서 세부 규정내용은 교수회가 스스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재현 의장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교수회의 자율성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상황을 위임하기보다는 최소한 외형정도는 학칙에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외형이라 함은 교수회의 구성원은 누가 되는지, 전체적인 심의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서명

교원의원			직원의원			학생의원	동문의원		외부의원	
이재현 의장	공석	공석	박준석 의원	김은찬 부의장	이태승 의원	김현지 의원	이규진 의원	오승우 의원	이송현 의원	김정철 의원
이재현			박준석	김은찬	이태승	김현지			불참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권한에 관한 내용, 교수회의 의장을 어떻게 뽑는가에 대한 정도는 학친 안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히다. 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다.

이태승 의원 모든 것을 위임하기보다는 큰 범주를 규정 하자는 것인지 묻다.

이재현 의장 예를 들면, 교육과정 변경, 학교 내의 장기 발전 계획, 그 이외 기타 중요 정책들과 같은 내용은 교수회 회의를 거쳐야 한다. 라는 식으로라도 간략하게나마 권한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한과 같은 규정은 하위부분에 위임한다고 할지라도, 운영과 관련하여 의장 구성 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태승 의원 타 대학은 교수회 의장을 누가하는지 묻다.

이재현 의장 예전 교무위원회를 할 때 규정들을 찾아봤었다. 크게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교수회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와 다른 한 가지는 총장이 교수회 의장을 한다. 두 가지였다.

이태승 의원 어떤 장·단점들이 존재하는지 묻다.

이재현 의장 교수회 의장에 관하여 대학평의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우리학교는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다. 그래서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이런 측면이라면 김은찬 부의장이 말했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 그래서 교수회 의장을 전체교수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한다.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이태승 의원 학교는 실질적으로 총장님이 이끌어 가는데, 교수회 의장이 교수회의 의견을 모아서 총장님의 운영방향과 맞지 않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다.

이재현 의장 그런 일들 때문에 대학 내에서 싸우는 일이 부지기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교수회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태승 의원 그런 경우에 총장님 의견이 우선하는지, 교수회의 의견이 우선하는지 묻다.

이재현 의장 이럴 경우에 분쟁사유가 되는 것이다.

김은찬 부의장 보통은 총장님이 우선권이 있다고 답하다. 실제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총장님이기 때문이다. 보통 교수회라는 집단이 학교 내에서 힘이 있는 집단이다. 구성원들이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서명

교원의원			직원의원			학생의원	동문의원		외부의원	
이재현 의장	공석	공석	박준석 의원	김은찬 부의장	이태승 의원	김현지 의원	이규진 의원	오승우 의원	이승현 의원	김정철 의원
이재현			박준석	김은찬	이태승	김현지			불참	

교수이기에 교수회의에서 총장님의 결정 사항에 반대를 한다면, 분쟁사항에 대한 방법까지 규율할 수는 없다. 그런 것이 소위 말하는 정치력이지 않나 생각한다.

이재현 의장 보통 분쟁사유라고 한다면, 우리학교의 경우 예전에 총장과 교수협의회가 대립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보통 다른 대학의 대부분의 분쟁은 총장과 교수회의 대립이다. 김은찬 부의장이 말한 것처럼, 해결방안이 없다. 그런데 이제는 방향이 달라 질 수 있다. 우리학교에 교수노조가 생겼다. 과거 교수노조가 없어서, 교수협의회가 대표단체 역할을 했었다. 노조위원회가 생긴다면 또 다른 역할을 분담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교수회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있다. 그래서 보통은 교수회 의장을 총장이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의 경우 충돌을 피하게 위해서 총장이 교수회 당연의장으로 되어있다. 대행 자격도 교무처장이하고 부의장도 규정 되어 있는 곳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교수회의 존재 의의가 사라져 버린다는 측면도 있다.

이태승 의원 교수회가 자문기관인지 심의기관인지 묻다. 그것도 명확치 않은가. 그런 근거규정이 없다면 그냥 힘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추진해 나가는 단체로 봐야 할 것인지 묻다.

이재현 의장 권한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예전에는 교수회가 가장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교수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학평의원회라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학교의 대표가 교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 직원, 학생의원을 두어서 교수회를 견제하도록 한 것이다.

김은찬 부의장 교수회 자체에 대하여 권한을 평의원회에서 규율하는 것이 쉽지 않다. 권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 평의원회에서 논의 할 것이 아니라, 교수회든지, 가칭 교수회, 임시교수회든지, 교수들이 모여서 학교 운영진들과 모여서 결정을 해서 대학평의원회에 알려 줘야 하는 것이지. 평의원회에서 의장을 누가 하고 권한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쨌든 교수회라고 하면 구성원은 전임교수로 구성 한다는 점, 권한이나 운영은 교수회 규정으로 넘기자고 한 것은 교수회의 존재 근거는 학칙에 규정은 해주되,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의 논의는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재현 의장 김은찬 부의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남현일 교수의 의견서이다.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서명

교원의원			직원의원			학생의원		동문의원		외부의원	
이재현 의장	공석	공석	박준석 의원	김은찬 부의장	이태승 의원	김현지 의원	이규진 의원	오승우 의원	이송현 의원	김정철 의원	
이재현			박준석	김은찬	이태승	김현지			불참		

③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예시)

2. 총장, 교수평의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총장에 대한 불신임에 관한 권한까지 규정하겠다고 되어 있다. 이 부분은 대학평의원회에서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불신임권을 갖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고 말하다. 그런 학교들은 어떤 구조이냐 하면, 교수회 자체가 총장을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것들까지 교수회에서 따로 규정을 만들어서 올린다고 한다면, 대학평의원회와 충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김은찬 부의장 총장선출권을 교수회에서 가질 수 있으나 불신임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재현 의장 교수평의원 뿐만 아니라 총장도 불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태승 의원 문제가 될 수 있다. 좋은 쪽으로 하려 한다면 좋지만,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재현 의장 교수회의 취지가 대학평의원회와의 견제하는 부분이 있다.

이태승 의원 교수회에서 총장, 교수평의원 불신임권이 있다고 한다면, 대학평의원회에서도 똑같이 교수를 해임하고 채용하는 권리가 있다는 말과 같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재현 의장 권한을 전부 위임했을 때, 총장 불신임권과 같은 내용을 규정에 포함시킬까 하는 우려도 있다.

김은찬 부의장 위임을 해도 규정이기 때문에 총장님의 부결 시킬 수 있다. 교무위원회에서 부결 시키던지. 어차피 교수회 운영규정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에 심의하고 공포하는 권리가 있는 것은 교무위원회와 총장님이다. 교수회가 생겨서 어떠한 의결을 한다고 해서 확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재현 의장 교수회 신설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안건이 상정된 것이 없고, 학칙에 근거 규정을 위한 개정안만이 올라왔다. 교수회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내용들을 교수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교무위원회의 결정에 평의원회가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김은찬 부의장 학칙의 교수회 조문 개정안 자체를 삭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재현 의장 개정안을 없앤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묻다.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서명

교원의원		직원의원			학생의원	동문의원		외부의원		
이재현 의장	공석	공석	박준석 의원	김은찬 부의장	이태승 의원	김현지 의원	이규진 의원	오승우 의원	이송현 의원	김정철 의원
이재현			박준석	김은찬	이태승	김현지			불참	

김은찬 부의장 교수회와 관련한 것을 아예 개정을 안 하는 것이다.

이재현 의장 아예 개정안을 없애버리고 교수회 자체에서 논의하게끔 하는 것으로.

이태승 의원 실체가 없지 않은가 묻다.

김은찬 부의장 이 부분은 대학평의원회가 되었든, 교무위원회가 되었든, 무언가 결정하기 쉽지 않은 사항이다. 그렇다면 교수들 자체에서 논의를 하고 그것을 반영해주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

이재현 의장 필요에 의해서 논의를 하고 요구하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

이태승 의원 학칙 개정안에 교수회 내용을 교수들의 요구로 올린 것인지 묻다.

김은찬 부의장 김은찬 부의장이 스스로 개정안을 올린 것이라 말하다.
교수회라는 것 자체가 법적인 규정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계속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도 선출되지 않고 있고, 회의를 하자고 해도 회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교수회라는 규정 자체는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

이태승 의원 김은찬 부의장의 그런 의견이라면, 무언가 안 되니까 규정을 만들려고 한 것인데 삭제하면 안되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재현 의장 정리하자면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첫 번째 안은 제 75조의 2에서

제75조의2(교수회 구성) ① 본 대학에는 교수회를 두며,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단, 이하 단서 규정 삭제하고 76조의2부터

제76조의2(교수회 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총장이 되며, 의장 부재시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 교수회는 재적 전임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전임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③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본조신설 2020.XX.XX.]

개정 조문은 삭제하는 것 이 첫 번째 안이다. 말 그대로 근거 규정만 남겨두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교수회의 근거 규정 전체를 없애자는 것이 두 번째 안이다.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서명

교원의원			직원의원			학생의원	동문의원		외부의원	
이재현 의장	공석	공석	박준석 의원	김은찬 부의장	이태승 의원	김현지 의원	이규진 의원	오승우 의원	이송현 의원	김정철 의원
이재현			박준석	김은찬	이태승	김현지			불참	

추가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는지 제 의원들에게 묻다.

이태승 의원 교수님들 검토의견서 내용에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보직처장 및 학부(과)장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XX.XX.]

이 부분이 겹친다고 의견을 냈다.

김은찬 부의장 교무위원회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태승 의원 겹쳐지는 부분이 남는 것이 괜찮은지 묻다.

김은찬 부의장 이 부분도 삭제하는 것이라 말하다.

제75조의2(교수회 구성) ① 본 대학에는 교수회를 두며,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첫 번째 안은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는 실체규정만 남기는 것이다.

이재현 의장 기타 의견이 없으므로. 두 가지 안중에서 표결을 통해서 의결하고자 한다.

첫 번째 안은 근거규정만 남기는 것이다.

제 의원들이 거수로 표결을 하다.

만장일치로 제75조의2에서 근거규정만 학칙에 남겨두는 것으로 의결하다.

김은찬 부의장 사족을 더하자면 '구성한다.'까지만 규정으로 남길지, '운영에 관련한 내용은 교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내용까지 넣을지 의원들의 의견을 묻다.

이재현 의장 위임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 묻다.

김은찬 부의장 언젠가는 들어가야 할 가능성의 높다고 말하다.

이재현 의장 위임조항을 넣는 것으로 하다. 취지 자체가 위임한다는 내용이므로.

김은찬 부의장 2항으로 규정에 넣는 것으로 하다.

제75조의2(교수회 구성) ① 본 대학에는 교수회를 두며,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이재현 의장 제 의원들의 의견이 있는지 묻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개정을 선포하다.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서명

교원의원			직원의원			학생의원		동문의원		외부의원	
이재현 의장	공석	공석	박준석 의원	김은찬 부의장	이태승 의원	김현지 의원	이규진 의원	오승우 의원	이송현 의원	김정철 의원	
이재현			박준석	김은찬	이태승	김현지			불참		

<제15장 명칭을 개정하고, 제75조의2 1항, 2항 만장일치로 개정을 선포하다.>

이재현 의장 자문 안건들을 설명하다.

예·결산과 관련해서는 회계 직원의 출석하여 설명할 것을 요청하다.

김은찬 부의장 교육과정 자문부터 할 것을 요청하다.

이재현 의장 김은찬 부의장에게 교육과정과 관련한 사항 설명을 요청하다.

김은찬 부의장 2021학년도 교육과정표를 회의 자료로 나눴지만, 2020학년도 교육과정도 여러 가지 학교 사정 때문에 대학평의원회에서 자문을 받지 않았다. 올해와 바뀐 부분만을 간략히 설명하다.

전공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이다. 학칙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21학년도 입시까지는 지금과 동일하다. 계열로 모집을 해서, 두 개의 학부로 구분하고, 두 개의 학부가 4개의 전공으로 나뉘는 것이다. 4개의 전공은 학교 내부 운용의 묘다.

이재현 의장 운용의 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편법이지 않은가. 원칙적으로 한다면 학과운영을 위해서는 2월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그 부분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법인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자문이 있었다. 2020년 초에는 이번에도 다시 법인에 올릴 예정인지 묻다.

김은찬 부의장 학제를 바꾸면서 웅지학원법인에서 허락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작년 이완휘 전 총장 시기에 처음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재현 의장 법인에 자문 받아보라는 지시 때문에.

김은찬 부의장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22학년도부터 학과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4개 전공을 4개 학과로 개편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개편에 앞서 학칙도 개정해야 하고, 학과별 배정인원 등도 결정이 되어야 시작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전혀 논의가 되어있지 않다. 코로나 때문에 비 대면으로 됨으로써 교수님들이 모여서 학과 별 배정 인원 등에 대하여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다. 2022학년도부터 학과제를 할지, 안할지 담당자는 아니지만 직원으로서 말하자면 알 수가 없다. 학교가 학과제로의 방향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학과제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서명

교원의원			직원의원			학생의원	동문의원		외부의원	
이재현 의장	공석	공석	박준석 의원	김은찬 부의장	이태승 의원	김현지 의원	이규진 의원	오승우 의원	이송현 의원	김정철 의원
이재현			박준석	김은찬	이태승	김현지			불참	

이재현 의장 학과제가 아님에도 학과제로 운영을 했을 때 차후 다른 학생들의 불만 사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김은찬 부의장 전공제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행정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있고, 전공제가 학교 운용의 묘라고 말한 부분은 사실 학교의 학과라는 것은 표준분류에 따라서 공시되어야 하는데, 우리학교에서의 전공이라는 것은 공시가 되어 지지 않아 대외 공시에서 학과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계열로 모집을 해서 학부제로 나누고 실제로 운영은 전공을 나눠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논의된 것은 일련의 경과 조치로서 1년만 운영을 하고 21학년도부터 학과제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계속 번복되어 왔다. 그래서 22학년도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것에 의견이 있으시다면 어차피 기본은 학칙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과제가 가능하다면 학칙 개정안이 올라올 것이다. 그때 대학평의원회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 2022학년도에 학과제가 실시된다는 것은 단언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재현 의장 학과제가 시행 된 이후에 교육과정이 나와서 자문을 받는 과정이 맞다 생각한다. 이번 회의에서 자문을 위해 올라온 교육과정은 학과제가 학교규정과 전혀 맞지 않다. 대학평의원회가 자문기관이지만 자문을 한다면 학제부터 구성을 하라고 자문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사실은 내년 2월에 신청을 해도 그 다음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 학과제가 시행되는 것은 2023년이 되는 것이다.

김은찬 부의장 아직은 시간이 있어서 2022년부터 시행 가능하다고 답하다.

이재현 의장 내년 2021학년도는 신청이 끝났다. 시행이 빨라도 2022학년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교육부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우리학교 소명이 통과 할 수 있는가. 의구심이 있다. 대학평의원회 입장에서는 심의기구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한다. 학과제로 개편하여 운영 하는 것도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하고, 특히 학과 폐지와 같은 경우에는 전공교수들은 책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부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면 학과 개설도 어렵다. 그런 과정 없이 교육과정부터 만들겠다는 것인데 나중에 학과제가 시행이 안 되었을 때 학생들이 졸업하는 시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부분에서는 대학평의원회가 문제 제기하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서명

교원의원			직원의원			학생의원	동문의원		외부의원	
이재현 의장	공석	공석	박준석 의원	김은찬 부의장	이태승 의원	김현지 의원	이규진 의원	오승우 의원	이송현 의원	김정철 의원
이재현			박준석	김은찬	이태승	김현지			불참	

- 김은찬 부의장** 이재현 의장의 의견에 동의한다. 교육과정이 먼저 생기게 된 것도 편법이다. 학부제를 운영하면서 전공이라는 이름으로 학과제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자문 의견을 누구에서 보내야 할지 묻다.
- 이재현 의장** 회의록에 작성하면 되지 않은가 답하다. 자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회의록에 작성하도록 하다. 의원들의 거수 의견을 남기도록 하다. 제 의원들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이태승 의원** 의장의 의견은 학과제로 먼저 바꾸고 나서 교육과정을 세우는 것이 맞는가. 묻다.
- 이재현 의장** 자문하고 있는 자료의 내용은 학과제 교육과정이다. 우리학교는 학과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데 학과제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 이태승 의원** 교육과정을 바꾸자고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묻다.
- 김은찬 부의장** 학교라고 답하다. 2021학년도에 학과제를 실행한다는 것을 기초로 교육과정을 개편한 것이다.
- 이재현 의장** 올해 신청하여 2021학년도에 시행하려는 전제 하에 진행이 되었던 것인데, 올해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
- 이태승 의원** 학과제로 운영을 해야 학교가 살아나기에 이렇게 진행 한 것으로 생각된다.
- 김은찬 부의장** 교육과정을 먼저 계획한 것은 편법인 것이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공별 교육 과정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학과제를 기초로 하는 교육과정이라면 정확하게 학과제를 빨리 하도록 촉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보다도. 교육과정 자체가 학과제에 적합하게 운영 할 것이라면 지금같이 편법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학과제를 명확하게 추진해서 개편을 하는 것이 옳다는 자문 의견이다. 특별한 구속력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의견이다.
- 이재현 의장**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학평의원회 자문의견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학과제라는 것이 대학을 선택할 때 중요한 부분이다. 최소한 공시를 위해서 그전에 보내라는 것이다. 그런 것을 공시하지 않고 학부생으로 모집한 다음에 학과로 배정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 부분은 평의원회에서 의결하여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서명

교원의원			직원의원		학생의원	동문의원		외부의원		
이재현 의장	공석	공석	박준석 의원	김은찬 부의장	이태승 의원	김현지 의원	이규진 의원	오승우 의원	이송현 의원	김정철 의원
이재현			박준석	김은찬	이태승	김현지			불참	

제 의원들의 반대의견이 있는지 묻다.

반대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다.

김은찬 부의장 전공제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학과제를 전제조건으로 기초하여 만든 것이다.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학과제 개편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재현 의장 교육과정과 일치 할 수 있는 학제제도를 마련하길 촉구한다. 원래는 학제제도가 마련되고 교육과정을 계획해야 한다.

김은찬 부의장 지금 이재현의장의 의견이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다만 크게 바뀌는 것은 1학년 1학기에 필수과목이 많았다. 그들은 전부 없애고 회계원리 정도만 필수로 남겨 두고 나머지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바꾸는 것이다. 대신 선택과목의 종류를 늘린 것이다. 교육과정 자료상 음영 처리 된 부분이 새로 추가 된 과목이다. 경영세무정보학부와 회계세무정보학부의 1학년1학기 교육과정은 계열이기 때문에 동일하다. 음영처리 된 과목들은 어떤 것인가 하면 4개의 전공에서 각 2개의 선택과목이 들어간 것으로 보면 된다.

이재현 의장 나중에 인원 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다.

김은찬 부의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김현지 의원 1학년 교양과목에 동영상제작하는 과목이 있다고 들었다. 그 과목이 어떤 것인지 묻다.

김은찬 부의장 그 과목이 비즈니스와 뉴미디어이다. 라고 답하다.

회계세무정보학부계열에서 특별하게 선택과목을 넣지 않았던 것은 경영경제수학과 같은 과목들이 교양과목이기 때문에 새로 배정하지 않은 것이다. 교양과목들이 신설되고 필수과목들이 사라졌다. 이 정도가 크게 바뀐 부분이다. 회계 세무 정보 학부는 2020학년도와 동일하다. 경영세무정보학부는 하단 음영처리 된 부분은 소위 말하는 군무원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공무원공공인재 쪽에서 군무원 과정 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다. 군무원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새로 2021학년도 교육과정에 신설하였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재현 의장 제 의원들의 기타 의견이 있는지 묻다.

기타 의견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학과 제도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촉구하다. 44:58

<교육과정 자문과 관련하여 학과 제도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만장일치로 촉구하다.>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서명

교원의원			직원의원			학생의원		동문의원		외부의원	
이재현 의장	공석	공석	박준석 의원	김은찬 부의장	이태승 의원	김현지 의원	이규진 의원	오승우 의원	이송현 의원	김정철 의원	
이재현			박준석	김은찬	이태승	김현지			불참		

예산 설명을 위해 사무처 윤선희 주임 회의장에 출석하다.

이재현 의장 예산 자문을 시작하다.

윤선희 주임 2020년도 추경예산서 자료설명을 시작하다. 3페이지 총괄표를 보며 설명하다. 등록금수익이 예산액은 82억인데 추경 예산은 69억이다. 본예산 등록금수익의 정원을 599명으로 설정하고 있다. 실 등록 입학생의 정원이 279명으로 감소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이재현 의장 2021년도 예산액에서 등록금수익 역시 등록한다는 전제하로 봐야하는지 묻다.

윤선희 주임 지금까지는 예산에서 등록금수익 정원을 599명으로 설정해왔다.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599명으로 설정하지 않고 추경 값을 반영했다. 추경 기준으로 설정하여 279명으로 설정하였다.

이재현 의장 알겠다고 답하다.

윤선희 주임 그래서 등록금수익은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 전입 및 기부수입을 보면 기부금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측 값으로 추경에 기부금수익 10억으로 설정되어있다. 기획처 요청사항으로 설정되어있는 상황이어서 증액인 것이다. 교육부대수입이 감소한 것은 자판기나 식당 임대료가 코로나로 인하여 감액이 된 것이다. 지출 부분도 수익금액이 감소되면서 같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보수의 경우 35억에서 38억으로 증액이 된 부분이 있다. 교수 책임시수를 반영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미반영 하다 보니 보수 책정이 많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보직수당도 증가를 해서 보수는 증액이 되었다. 교육외비용에서는 예산은 1억8천이었으나 추경에서 6억9천으로 많이 증액 된 부분은 임금체불소송과 관련하여 임금과 이자를 갑자기 지급하다보니 증액을 하게 되었다. 나머지 지출은 감액된 사항이라고 설명하다. 제 의원들에게 예산자료를 보고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답변하겠다고 하다.

김은찬 부의장 추경예산은 이미 지출된 사안이라서 특별히 질문할 것이 없을 것 같다고 하다.

윤선희 주임 거의 지출 된 것이라 해도 앞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특이사항이다.

이재현 의장 의원들의 질문이 없으므로 이견 없이 2021년 본예산 심의를 시작하다.

윤선희 주임 회의 이후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메일로 문의를 주면 답변하겠다고 하다.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서명

교원의원		직원의원			학생의원	동문의원		외부의원		
이재현 의장	공석	공석	박준석 의원	김은찬 부의장	이태승 의원	김현지 의원	이규진 의원	오승우 의원	이송현 의원	김정철 의원
이재현			박준석	김은찬	이태승	김현지			불참	

2020회계연도 본예산자료 3페이지 총괄표를 보며 설명을 시작하다.

20년도 추경예산과 같은 상황이다. 20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는 것이다. 등록금수익도 크게 감소하였다. 기부금 수익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예산으로 15억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재현 의장 기부금수익 설정 15억을 누가 하라고 했는지 묻다.

윤선희 주임 기획처에서 기획처장이 설정한 금액이다. 총장님과 처장단 회의에서 나온 결과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15억으로 설정되어 있다. 지출 쪽 보수를 보면 20년도 본예산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책임시수 미반영과 보직수당으로 인한 증액이다. 나머지는 감액 상황이다. 2020추경예산과 2021본예산이 비슷하게 되어 있다. 제 의원들에게 항목별로 궁금한 사안을 질문하면 답변을 하겠다고 하다.

김현지 의원 수익부분에 수업료가 감액되었는데 수업료를 한 학생당 340만원정도 납부하고 있다. 그 금액은 그대로 인지 묻다.

윤선희 주임 수업료는 현재 348만원이고 입학금만 입학금감축계획에 따라 13.4%씩 감소되고 있다. 수업료는 348만원 그대로이다.

김현지 의원 다음 학기에도 수업료는 340만원정도 납부 하는 것인지 묻다.

윤선희 주임 그렇다고 답하다.

이재현 의장 법정부담전입금에 대해서 질문하다.

윤선희 주임 법인에서 들어 올 것이라고 해서 설정 한 것인데 항상 설정액만큼 들어오지 않아서 추경 때마다 감액하고 있다.

김현지 의원 리스임차료 부분에 전년도 예산을 보면 관용차 렌트료가 없었는데, 전년도에 유류비만 90만원씩 12번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다. 21년도 보면 렌트료가 추가되고 유류비가 조금 줄어서 12번 지급으로 되어 있다.

윤선희 주임 전년도에는 렌트료가 지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 총장님 부재로 인해 렌트료 지출이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총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지출이 발생한 것이다.

이재현 의장 기부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우리학교 내년 예산을 보면 학생정원도 줄었다고 했지만 신입생 수도 줄 것이다. 많이 잡았다고는 했지만 기부금 수익 학교 예산에 22%라고 되어 있다. 전년도 추경예산을 보게 되면 기부금수익을 10억으로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서명

교원의원			직원의원			학생의원	동문의원		외부의원	
이재현 의장	공석	공석	박준석 의원	김은찬 부의장	이태승 의원	김현지 의원	이규진 의원	오승우 의원	이송현 의원	김정철 의원
이재현			박준석	김은찬	이태승	김현지			불참	

설정하라고 들었는데 실제 10억이 학교 기부금으로 들어왔는지 묻다.

윤선희 주임 추경의 경우에는 2월까지의 예측값을 설정하는 것이다. 실제 수익금액이 아니며 그 금액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듣기로는 100인 장학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김은찬 부의장 결산을 가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윤선희 주임 그렇다고 답하다.

이재현 의장 대학평의원회가 예산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바는 기부금 수익이 전체 예산의 5 ~ 6% 가 아니라 22%나 설정되어있다는 것. 기부금 수익이 학교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면 기획처에서 이 정도를 설정해 달라고 해서 바로 반영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기부금이 들어 올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윤선희 주임 기부금과 관련한 계획안은 받지 못했다고 답하다.

이재현 의장 사무처에서 받아야하는 것이 맞다. 계획안을 받아야 예측이 가능하고 예산에 반영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은찬 부의장 이 부분은 부연 설명을 하자면 회계팀 윤선희 주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이재현 의장 기획처에 계획서를 받도록 재촉 할 수 없나 하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다.

윤선희 주임 기부금 금액 자체도 수 차례 요청해서 어렵게 반영한 금액이다.

박준석 의원 대학평의원회 의장님께서 요청하시면 될 것이다.

이재현 의장 대학평의원회 자문에 계획서 제출을 촉구하는 자문을 넣으려고 한 것이다.

윤선희 주임 대학평의원회에서 요청하는 것이 빠를 것이다.

이재현 의장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에 기부수익의 경우에 상세한 내역을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무처에 제출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다.
제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있는지 묻다.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서명

교원의원			직원의원			학생의원	동문의원		외부의원	
이재현 의장	공석	공석	박준석 의원	김은찬 부의장	이태승 의원	김현지 의원	이규진 의원	오승우 의원	이송현 의원	김정철 의원
이재현			박준석	김은찬	이태승	김현지			불참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기부금 관련한 사업안 계획서와 예측 수익금을 사무처에 제출하도록 만장일치로 촉구하다.

윤선희 주임 21년도 본예산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등록금수익을 정원을 599명으로 반영을 하다가 이번에는 추경 값으로 279명으로 반영했다고 알려드렸다. 실질적으로 입학처에서 보낸 자료의 인원은 88명이었다.

박준석 의원 신입생인지 묻다.

윤선희 주임 신입생이 88명이라고 답하다. 매년 감소 추세를 반영 했을때 약190명 정도가 되어야 하지만 입학처에서는 88명으로 예측하고 있고, 예산서에는 정원이 279명으로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다하게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하다.

이재현 의장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기부금 수익이 들어오지 않고, 신입생도 줄어든다고 한다면 예산의 30%가 구멍이 나는 심각한 상황이다. 다른 부분은 대학평의원회에서 통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부금 수익이 들어온다면 다행인 것이다. 확실히 할 수 있는 답을 보유 할 수 있도록 문서 형태로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태승 의원 문서형태로 줄 수 있을지 묻다.

이재현 의장 문서 형태로 전달해야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태승 의원 정확하는 모르지만 혼자 생각은 뭔가 기부금을 받기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기대감일수도 있고, 누군가가 기부를 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 기부금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부라는 것이 남이 주는 것 인데 정확한 예측 계획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현 의장 그렇게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문제 삼는 이유는 교수들 사이에서 전체 교원 연봉 책정이 심각하다. 기준 금액이 제작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논거는 수입이 그만큼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실 예산 설정 할 때에는 열심히 해서 어떻게 돈이 들어온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안을 다 같이 인지를 하고 교수 연봉을 책정을 하든지 되어야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급여가 지급 되지 않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문제 이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내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획에 기반 한 내용인지, 얼마를 예측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 인지 지금 학교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서명

교원의원			직원의원			학생의원	동문의원		외부의원	
이재현 의장	공석	공석	박준석 의원	김은찬 부의장	이태승 의원	김현지 의원	이규진 의원	오승우 의원	이승현 의원	김정철 의원
이재현			박준석	김은찬	이태승	김현지			불참	

사무처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

김은찬 부의장 기부 수익은 아는 범위에서 간단히 설명하다.

크게 두 가지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첫 번째는 100인장학회라고 해서 100만원 계좌로 해서 100을 받는. 그래서 파주 인근에 유력인사로 해서 장학금을 받으려 하고 있고 여러 행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번째는 발전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최근에는 위촉식도 했다. 발전위원회들이 그분들도 파주 분들이다.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발전기금을 모으러 다니시도록 학교에서 명함도 제작하고, 위임장도 수여하고 이 정도는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기획처장님이나 처장님들이 대외적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계신 것은 맞다. 우리학교가 외부위원회 같은 것을 꾸려본 적이 없다. 학교 상황이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총장님 예하 보직자 분들이 눈을 돌리신 것이 맞다. 실제로 성과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모르지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맞다.

이재현 의장 그분들에 대한 평가절하를 하고자함은 아니다. 한 가지 큰 불안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김은찬 부의장 이재현의장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재현 의장 100인장학회의 초기안에는 1인당 300만원으로 알고 있었다. 나중에 100만원으로 바뀌었다. 실체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금액을 줄여서라도 모으기는 모아야하는데 10억을 모으겠다고 그렇게 예산을 설정하면 학교 내 구성원들에게도 위기상황이 인지되지 않을 수도 있고, 교수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재작년 연봉을 이야기 하고 있다.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어 질수 있게 예산안이 정확하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체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사무처에게는 근거문서가 전달되어야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물론 선의로 한 것이지만 책임질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대학평의원회에서 책임을 물겠다는 것은 아니다.

< 2020회계연도 추경예산안의 기부수익과 관련한 사업안 계획서를
기획처에서 사무처로 제출하도록 만장일치로 촉구하다. >

이재현 의장 이상 회의를 폐회하다.

<이상 회의 종료>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서명

교원의원			직원의원			학생의원	동문의원		외부의원	
이재현 의장	공석	공석	박준석 의원	김은찬 부의장	이태승 의원	김현지 의원	이규진 의원	오승우 의원	이송현 의원	김정철 의원
이재현			박준석	김은찬	이태승	김현지			불참	